

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114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5. 5.

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 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'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편익·휴식시설(주차장 등) 및 진출입로 활용'과 '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'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중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가. 계획의 총괄

○ 토지매입 및 공사비

(단위 : m², 천원)

재산의 표시			공시 지가	추정금액			소유자	취득사유
소재지	지 목	지적		계	토지매입	공사비		
계		1,531		2,450,000	1,450,000	1,000,000		
태화동 186-1	답	344	51	750,000	76,000	500,000	차재혁	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사업
태화동 186-2	답	782	51		174,000			
성남동 55	대	398	1,200	1,700,000	1,179,300	500,000	김철욱 손복자	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
성남동 55-2	대	7	1,020		20,700		손무선	

나. 사업계획

①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사업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태화근린공원(태화동 178번지 일원) 내 무단경작으로 인한 훼손지에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오염요소(비닐, 농약 등) 제거, 토사유출 방지 등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녹색휴식공간과 생태학습공간 제공

○ 사업기간 : 2015. 6. ~ 2015. 12.

○ 소요예산

- 총사업비 : 750,000천원
 - 보상비 : 250,000천원(구비)
 - 조성비 : 500,000천원(환경부 직접시행 : 생태계보전협력금)
-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내역

(단위 : 천원)

연도 재원	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사업비 내역
계	750,000	750,000			
국비	500,000	500,000			조성비 (환경부 직접시행)
시비					
구비	250,000	250,000			토지매입

○ 사업규모 : 9,664.8㎡

- 구 유 지 : 8,538.8㎡(생태복원 - 수목식재, 생태습지 등)
- 매입토지 : 1,126㎡(주민편익시설 - 주차장 등)

○ 추정금액 명세

- 토지매입 : 222,000원/㎡(2014. 태화공원사업 보상근거)
- 조 성 비 : 실시설계 14,522천원, 휴게 및 기반시설 86,655천원,
식생복원 및 생태시설 등 398,823천원(환경부 직접시행)

○ 계약방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

② 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녹색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므로, 문화의 거리 주변(보훈회관 옆)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 쉼터를 제공

○ 사업기간 : 2015. 6. ~ 2016. 6.

○ 소요예산

- 총사업비 : 1,700,000천원
 - 보상비 : 1,200,000천원(구비)
 - 공사비 : 500,000천원(구비)
-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내역

(단위 : 천원)

연도 재원	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사업비 내역
계	1,700,000	1,700,000			
국비					
시비					
구비	1,700,000	1,700,000			· 토지매입비 1,200,000 · 공사비 500,000

○ 사업규모 : 405㎡(수목식재, 분수대 설치 등)

○ 추정금액 명세

- 토지매입 : 2,963,000원/㎡(2015년 울산광역시 소재 감정평가원 가감정)
- 공 사 비 : 실시설계 20,000천원, 수목식재 30,000천원,
분수대 설치 300,000천원, 장식가벽 150,000천원

○ 계약방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

3. 근거 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
-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

4. 참고 사항

-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
-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
-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

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	당 초			증 감			합 계			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토지	6	12,422	4,997,000	4	1,531	2,450,000	10	13,953	7,447,000	
		건물	2	4,849	8,138,000				2	4,849	8,138,000	
		기타										
	1. 매입	토지	6	12,422	4,997,000	4	1,531	2,450,000	10	13,953	7,447,000	
		건물	2	4,849	8,138,000				2	4,849	8,138,000	
		기타										
	2. 교환 으로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3. 기타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처 분	계	토지									
			건물									
			기타									
4. 매각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5. 양여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6. 교환 으로 처분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7. 기타 처분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
○ 회계명 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[illegible]

취득대상 재산목록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○ 토지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	추정 금액	취득 시기	취득사유
	소재지	지 목	지적	편입면적			
계			1,531	1,531	2,450,000		
1	태화동 186-1	답	344	344	750,000	2015년	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사업
2	태화동 186-2	답	782	782			
3	성남동 55	대	398	398	1,700,000	2015년	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
4	성남동 55-2	대	7	7			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①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사업

☐ 위치도



☐ 현장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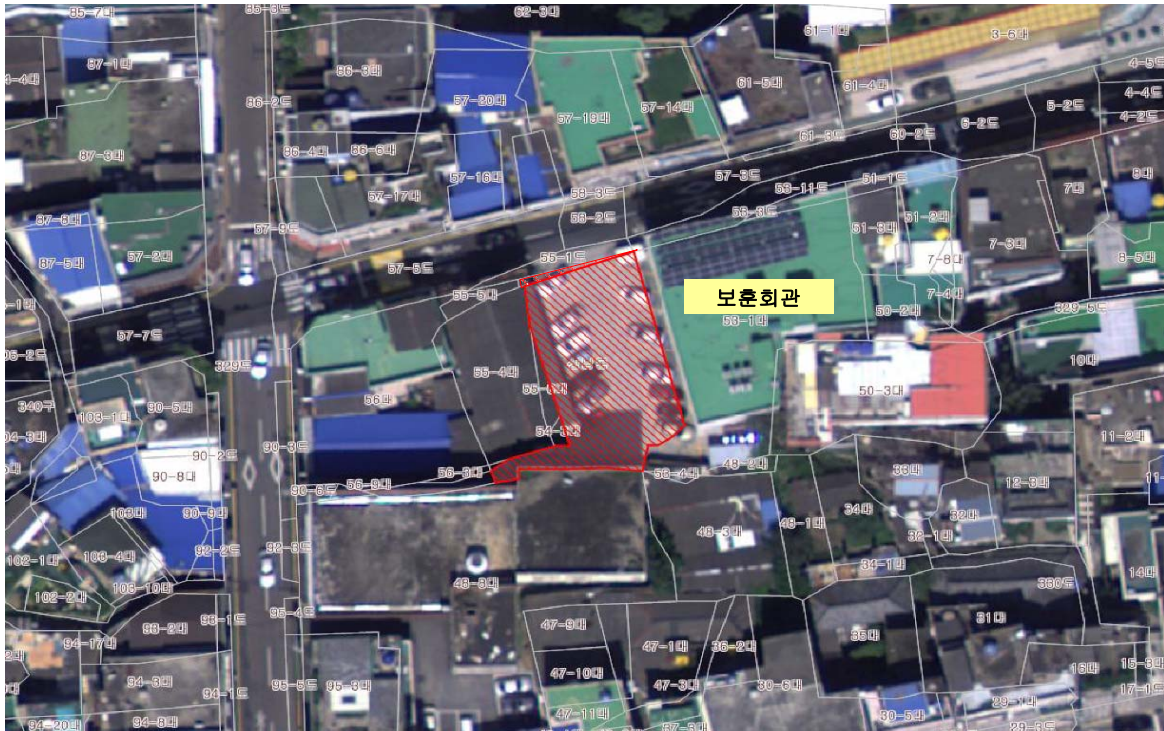


□ 조성계획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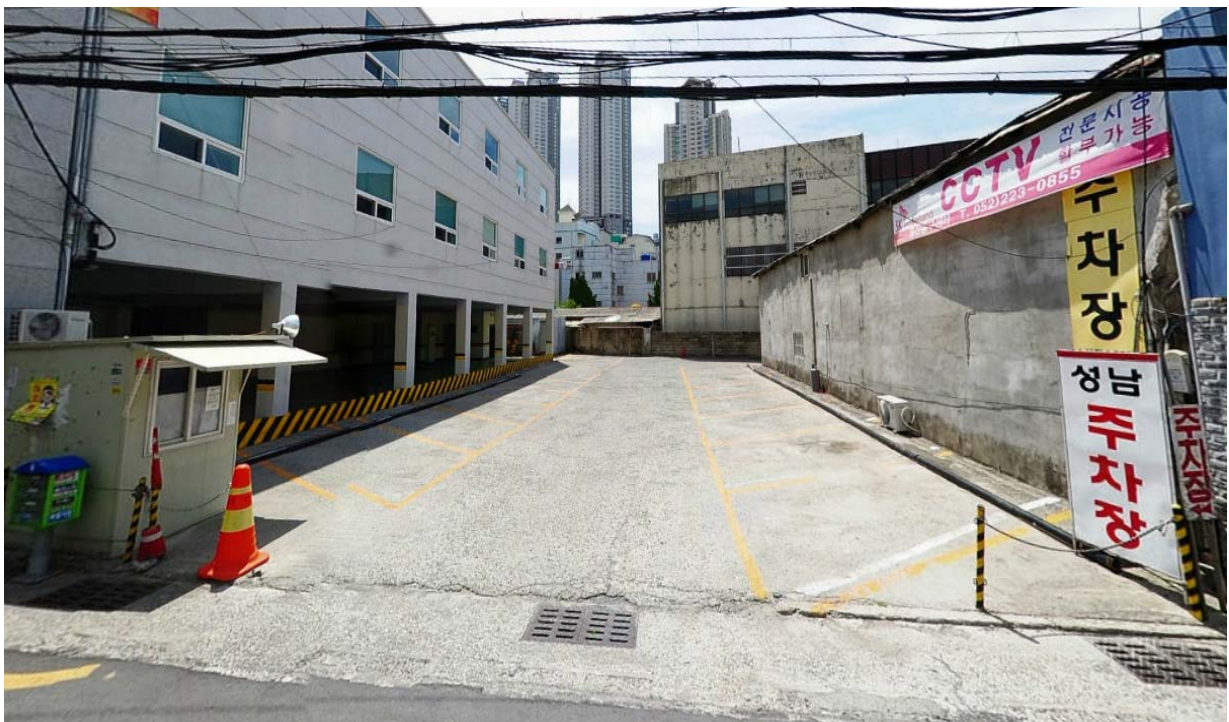


② 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

☐ 위 치 도



☐ 현장사진



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1141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15. 5. 6.(수)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5. 11.(월)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5. 14.(목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영국 행정지원국장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'태화근린 공원 내 훼손지 생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편익·휴식시설 (주차장 등) 및 진출입로 활용'과 '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'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중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계획의 총괄

- 토지매입 및 공사비

(단위 : m², 천원)

재산의 표시			공시 지가	추정금액			소유자	취득사유
소재지	지목	지적		계	토지매입	공사비		
계		1,531		2,450,000	1,450,000	1,000,000		
태화동 186-1	답	344	51	750,000	76,000	500,000	차재혁	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사업
태화동 186-2	답	782	51		174,000			
성남동 55	대	398	1,200	1,700,000	1,179,300	500,000	김철욱 손복자	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
성남동 55-2	대	7	1,020		20,700		손무선	

나. 사업계획

①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사업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태화근린공원(태화동 178번지 일원) 내 무단경작으로 인한 훼손지에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오염요소(비닐, 농약 등) 제거, 토사유출 방지 등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녹색휴식공간과 생태학습공간 제공

○ 사업기간 : 2015. 6. ~ 2015. 12.

○ 소요예산

- 총사업비 : 750,000천원
 - 보상비 : 250,000천원(구비)
 - 조성비 : 500,000천원(환경부 직접시행 : 생태계보전협력금)
-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내역

(단위 : 천원)

재원 \ 연도	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사업비 내역
계	750,000	750,000			
국비	500,000	500,000			조성비 (환경부 직접시행)
시비					
구비	250,000	250,000			토지매입

○ 사업규모 : 9,664.8㎡

- 구 유 지 : 8,538.8㎡(생태복원 - 수목식재, 생태습지 등)
- 매입토지 : 1,126㎡(주민편익시설 - 주차장 등)

○ 추정금액 명세

- 토지매입 : 222,000원/㎡(2014. 태화공원사업 보상근거)
- 조 성 비 : 실시설계 14,522천원, 휴게 및 기반시설 86,655천원, 식생복원 및 생태시설 등 398,823천원(환경부 직접시행)

○ 계약방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

② 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녹색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므로, 문화의 거리 주변(보훈회관 옆)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 쉼터를 제공

○ 사업기간 : 2015. 6. ~ 2016. 6.

○ 소요예산

- 총사업비 : 1,700,000천원
 - 보상비 : 1,200,000천원(구비)
 - 공사비 : 500,000천원(구비)
-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내역

(단위 : 천원)

연도 재원	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사업비 내역
계	1,700,000	1,700,000			
국비					
시비					
구비	1,700,000	1,700,000			· 토지매입비 1,200,000 · 공사비 500,000

○ 사업규모 : 405㎡(수목식재, 분수대 설치 등)

○ 추정금액 명세

- 토지매입 : 2,963,000원/㎡(2015년 울산광역시 소재 감정평가원 가감정)
- 공 사 비 : 실시설계 20,000천원, 수목식재 30,000천원,
분수대 설치 300,000천원, 장식가벽 150,000천원

○ 계약방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서대성)

- 공유재산관리계획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제1항과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
- 따라서 본 계획에 의하면
 -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 사업비 7억5천만원과
 -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7억 등 총 24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
- 향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

5. 심사결과

- ①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 사업 : 승인
- ②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 : 불승인

6. 불승인사유

- 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17억원으로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절차를 거쳐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
- 또한, 사업목적에 있어 문화의 거리 주변 녹색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쉼터 제공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구 중부소방서 부지의 공원 조성 계획이 논의되어 사업의 추이를 지켜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음